

## ●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-066호

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송달, 주거지 및 근무지 교부송달 등을 추진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8월 14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

### 행정처분(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) 사전통지 공고

#### ① 대상

당사자명	출생년월	주소	예정된 처분 내용
김*중	1965년 1월	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**	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

####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##### ○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가.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 · 감독 의무 위반

- 1)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(2021년 300%, 2022년 318% 지급 결정)
- 2) MBC 및 관계사(MBC플러스, MBC아트, 대구MBC) 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
- 3)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(MBC 정상화위원회 운영 관련)
- 4)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· 감독 부실

나.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

- 1)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검증

2) 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

3)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(사회공헌 지원사업 등)

다. MBC특별감사 업무에 파견 · 참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

##### ○ 근거법령 :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(목적), 제5조(업무), 제7조(임원의 직무), 제9조(이사회의 구성),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, 제14조(자금의 용도 및 관리),

방송법 제1조(목적), 제4조(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), 제5조(방송의 공적 책임), 제6조(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),

민법 제61조(이사의 주의의무)

##### ○ 예정처분 :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

#### ③ 의견제출

##### ○ 제출기한 : 9월 11일(월) 12:00까지

○ 의견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

○ 행정처분 담당자 : 권혁준 사무관

- 연락처 : 02-2110-1415
  - 팩 스 : 02-2110-0136
  - 전자우편 : [nexly@korea.kr](mailto:nexly@korea.kr)
- 제출방법 : 구술 ·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(의견제출서)
  - 유의사항
    -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술 ·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  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.
   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청문실시
- 청문일시 : 9월 11일(월) 10:00부터 12:00까지 (2시간)
  - 청문장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2동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(과천청사 2동 5층)
  - 청문 담당자 : 권혁준 사무관
  - 청문 주재자 :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(대표청문주재자), 법무법인 김장리 조남대 변호사(청문주재자)
  - 유의사항
    -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 ·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-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    -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